

사회적 형평성의 정의론적 논거모색: R. Dworkin의 ‘자원평등론’을 중심으로

임의영*

〈目 次〉

- I. 서론
- II. 형평성의 원리와 ‘동등한 배려’
- III. 이론적 기획: Berlin과 Rawls의 비판적 계승
- IV. 윤리원칙에 기초한 자원평등론
- V. ‘좋은 삶’과 ‘공동적 삶’의 조화 가능성
- VI. 자원평등론과 형평성, 그리고 정책적 함의
- VII. 결론

〈요약〉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의 주요이념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이념의 이론적 근거는 취약하다. 행정학계에서는 Rawls의 정의론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이념이 가지고 있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형평성은 자유와 평등 이념의 조화를 추구하는 조절이념이다. 형평성의 이념은 정의론에서 이론적 기초를 찾게 되는데, 현대의 정치철학에서는 수많은 정의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계에서는 형평성 이념을 이론적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평등 논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R. Dworkin의 논변을 형평성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동등한 배려’의 윤리원칙과 그에 기초한 ‘여전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자원평등론’은 자유주의정치철학의 중요한 과제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된다. 자유와 평등의 조절이념으로서 형평성은 Dworkin의 동등한 배려의 윤리원칙을 통해서 개념적으로 보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

【주제어: 형평성, 자원평등론, 정의, Dworkin, Rawls】

*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부교수(eylim@kangwon.ac.kr).

I. 서 론

행정학계에서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은 1960년대 말부터 변화된 환경에서 행정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이념들을 모색하는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이념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것은 ‘윤리/도덕적인 차원의 이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행정학 분야에서는 정의론의 관점에서 이념의 정당성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 Rawls(1971)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논거로 채택되었다(Frederickson, 1980; Harmon, 1974; Hart, 1974). 그 이후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행정학계의 관심은 Rawls의 정의론을 소개하는 것 이상을 넘지 못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먼저 현실적인 차원에서 미국사회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보수화됨으로써 1960, 70년대에 볼 수 있었던 가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았다는 데서 그 이유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1988년 제 2차 미노브룩 학술대회를 주관했던 Ferderickson(1989)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 행정학계의 관심이 공익에서 사익으로, 가치에서 사실로 다시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다음으로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유지상주의, 개인주의, 실용적 다원주의 등과 같은 이념이 지배하는 미국사회에서(Mathew, 1984) 평등을 중심축으로 하는 Rawls의 정의론은 정치철학적으로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의 정의론은 다양한 이론적 도전을 자극하기에 충분하게 영감을 주었다(Kymlicka, 2005; Miller, 1991). 그러한 의미에서 정치철학에 익숙하지 않았던 행정학계에서는 형평성을 정당화하는데 Rawls의 정의론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형평에 맞게 대우해야 하는 정치도덕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심화되고 확장된 논의를 중단하는 것은 정부의 근본적인 의무에 대한 연구를 기피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행정연구의 방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보다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물론 사회적 형평성은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이념이기 때문에 정의론에 대한 세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가령 정의론의 분야에서는 Rawls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론’ 이외에도, Nozick의 자격권리론(entitlement, 1974), Walzer의 복합평등론(complex equality, 1983), Young의 차이정치론(politics of difference, 1990), Dworkin의 자원평등론(equality of resource, 2002), 응분의 뜻(desert)에 관한 이론(Sher, 1987; Sadurski, 1985; Feinberg, 1970), 맑스주의 전통의 필요이론(need) 등 이루 해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Rawls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에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적 논거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임의영(1994; 2003)은 사회적 형평성 개념의 정의론적 논거로서 Rawls, Nozick, Walzer, Young의 경우

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할 수는 없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자유주의 정치철학 진영에서 평등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Wolff, 2007; Kymlicka, 2005; Scheffler, 2003; Stark, 2002; Roemer, 1993), 그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Dworkin의 정의론에서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한다.¹⁾ 이를 위해 우선 Dworkin이 정의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동등한 배려(equal concern)'와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적 동일성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Dworkin의 이론적 기획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그가 제시하고 있는 자원평등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자원평등론에 근거해서 그가 주장하고 있는 정의로운 삶의 가능성에 대한 논변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형평성의 논거로서 Dworkin의 논변이 갖는 의의와 한계,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형평성의 원리와 '동등한 배려'

형평성을 의미하는 영어 equity는 1315년 고대 불어 équité에서 유래하였다. équité는 동등(equality), 일치(conformity), 균형(symmetry), 공평(fairness)을 의미하는 라틴어 *aequitas*에서 유래하였다. 그리고 1591년부터 형평성은 법조항들을 교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의의 원리를 의미하는 법체계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Online Etymology Dictionary*, 2001). 어원의 전개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형평성은 규칙의 '경직된' 적용보다는 그러한 관행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형평성은 '규칙들의 기계적인 적용과는 다른 공평성에 따른 정의(justice)'를 의미한다(*Merriam-Webster's Dictionary of Law*, 1996). 따라서 Perelman(1963: 32)은 기계적 평등과 대비하여, 형평성은 모든 형태의 형식주의(formalism)를 보완하는데 필수적인 이념이라고 규정한다. 규칙의 신축적인 적용은 '양심의 명령과 자연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Random House Unabridged Dictionary*, 2006).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형평성은 단순히 법적인 원리가 아니라 윤리적/도덕적인 원리이다. 포괄적으로 형평성은 '올바른 대우의 정신과 습관(Federickson, 1980: 38에서 재인용)'을 의미한다. 바로 그 올바름은 사람들이 쳐해있는 상황과 규칙들을 연결시키는데 양심과 자연법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원리가

1) 국내에서 Dworkin의 정의론에 대한 연구는 시론적이며, 매우 적은 편이다. 염수균(2002; 2004), 김비환(2001; 2002) 정도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특히 염수균은 본 논문에서 주요 텍스트로 삼고 있는 *Sovereign Virtue*를 「자유주의적 평등(서울: 한길, 2006)」이라는 제목으로 해제와 함께 번역·출간하였다.

4 · 행정논총(제45권3호)

곧 정의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형평성에 대한 논변은 정의론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평성은 정치도덕(potitical morality)의 핵심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정의론은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적 삶(communal life)’과 구성원 각자의 ‘좋은 삶(good life)’이 성공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리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동적 삶과 좋은 삶은 보완적일 수도 있으며 상쇄적인 것일 수도 있다. 가령 공동적 삶을 강조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생각하는 좋은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이 생각하는 좋은 삶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적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형평성이 거론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형평성은 자유와 평등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절 이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하순(1983: 1)은 형평성을 ‘동등한 자유(equal liberty)’와 ‘합당한 평등(just equality)’으로 규정한다. 먼저 자유의 경우를 보자. 개별자를 전제하는 자유는 어떠한 제약도 없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사회적 관계에서는 어느 한 사람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이 나에게 허용하는 만큼의 자유를 남에게 행하는 것과 그 역의 관계가 동시에 적용되는 동등성이 형평성의 이념을 구성하는 동등한 자유의 관념이다. 다음으로 평등의 경우를 보자. 모든 사람은 Kant가 말하는 ‘목적적 존재’로서 평등하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사회적 가치들이 동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이 처해있는 여건에 따라 평등의 의미가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 때로는 차등이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선택될 수도 있다. 바로 이와 같이 평등의 원리가 여전에 따라서 상이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이 형평성의 이념을 구성하는 합당한 평등의 관념이다. 따라서 형평성은 합당한 평등과 동시에 합당한 불평등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은 형평성의 원리에 의해 유연하게 해석됨으로써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조화를 통해서 공동적 삶과 좋은 삶이 일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정의론자들 가운데 특히 Dworkin은 이러한 형평성의 이념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그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조화시키는데 있어서 평등을 자유의 도덕적 기초로 삼고 있다. Dworkin은 *Taking Rights Seriously*(1978)에서 ‘동등한 배려와 존중(equal concern and respect)’이 정치도덕의 이념적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우리 모두가 다음과 같은 정치도덕의 공리들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 정부는 통치 받는 사람들 모두를 고통과 좌절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배려해야 하며, 자신의 인생관을 형성하고 그것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보고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등하게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어떤 시민들이 더 많은 배려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로 재화와 기회를 불평등하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좋은 삶에 대한 어떤 시민의 견해가 다른 시민의 견해보다 더 고귀하고 우월하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공리들은 … 자유주의적 평등관(the liberal conception of equality)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1978: 272-273).

Dworkin은 자신의 정의관을 정리한 *Sovereign Virtue*(2002: 1)에서 ‘동등한 배려’를 정치공동체의 ‘최고덕목(sovereign virtue)’으로 삼는다. 그리고 그는 “정부는 통치받는 사람들의 삶이 더 좋은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각 개인의 삶에 대해 동등한 배려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추상적 평등의 원칙(the abstract egalitarian principle, 2002: 128)을 정립한다.

그렇다면 ‘동등한 배려’²⁾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Dworkin(2002: 11)에 의하면, 동등한 배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하나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treating people equally)’이며, 다른 하나는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treating people as equals)’이다. 전자는 정부가 바람직한 삶이 무엇이고,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규범적인 질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우한다는 것은 정부가 인간의 삶에 대해 어떤 규범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Dworkin, 2000: 191). 자유주의는 전통적으로 정부의 ‘중립성(neutrality)’을 중요한 미덕으로 강조한다.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중립성의 의미를 놓고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Jones, 1989), 그것은 Dworkin의 해석과 상응한다. 하나는 중립성을 무차별(indifference)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선택은 존중하지만 개인이 처한 여건의 차이에 대해서는 배려하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중립성을 ‘동등한 대우(equal treatment)’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개인이 처한 여건의 차이를 배려하는 것이다. Dworkin은 ‘동등한 배려’를 ‘사람들을 동등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으로 생각한다.³⁾ 따라서 ‘동등한 배려’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함과 동시에 여건의 차이를 배려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자유와 평등의 유연한 해석 및 조화를 강조하는 형평성의 이념과 일치한다. 이와 같은 Dworkin의 ‘동

2) Dworkin은 ‘동등한 배려와 존중’ 대신 ‘동등한 배려’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동일하다.

3) Rawls, Ackerman, Dworkin은 동등한 대우를, Mills, Locke, Nozick은 무차별을 강조한다 (Jones, 1989).

등한 배려’ 이념은 자유주의적 정치철학의 전통에서 Berlin과 Rawls를 비판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이론적 기획에 의해서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담게 된다.

III. 이론적 기획: Berlin과 Rawls의 비판적 계승

Dworkin의 정의론은 거대한 이론적 기획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Berlin의 가치다원주의(value pluralism)와 Rawls의 정치적 자유주의(potitical liberalism)를 극복하는 것이다(Dworkin, 2002: 5).

Dworkin의 정치철학적 관심은 기본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매우 영향력이 큰 자유주의이론가인 Berlin의 가치다원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조화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는 자유를 외부의 간섭이 없이 개인의 판단에 맡겨질 수 있는 자유의 영역을 강조하는 소극적 자유와 개인이 능동적인 인생의 주인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정도를 강조하는 적극적 자유로 분류한 바 있다(Berlin, 2002: 174, 178). Berlin은 일원론적인 사상을 전체주의적이며, 마니교적인 세계관으로 보고 있는데, 적극적 자유관이 궁극적으로 일원론과 선택적 친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자유는 삶의 주인으로서 주체의 능동성을 강조함으로써 타인의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 즉 다른 주인들을 노예로 삼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소극적 자유는 다양한 가치들의 공존을 인간적 삶의 조건으로 보기 때문에 자유의 제한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Berlin은 소극적 자유에 내포된 다원주의적 동기를 강조한다.

Dworkin은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Berlin의 입장을 수용한다. 단지 그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Berlin이 가치다원주의의 논리에 근거해서 자유와 평등을 대립적인 가치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Dworkin이 비판을 위해 인용한 Berlin의 주장을 보자. “가치들이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가치들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걸핏하면 서로 부딪힌다. 하지만 그 사실이 어떤 것은 진실이고 어떤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자유와 평등은 둘 다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우선적 목표에 속한다. 그러나 여우들에게 진적인 자유가 부여되는 것은 곧 양들의 죽음을 뜻한다. 따라서 가치의 충돌은 그들과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Dworkin, 2006: 10에서 재인용).” Berlin의 주장처럼,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위협을 받고, 평등을 강조하면 자유가 위협을 받는 것인가? Dworkin의 이론적 기획은 자유와 평등의 갈등 관념을 극복하고 양립가능성을 논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Rawls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Dworkin의 비판적 입장은 살펴보자. 무엇보다도 Dworkin은 윤리원칙에 기초한 정치도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윤리원칙이 아닌 사회계약에 기초한 Rawls의 정치도덕은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Rawls의 정의원칙을 보자(Rawls, 1971: 42). (1)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자유를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2)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i) 그러한 불평등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ii) 불평등과 결부된 직무와 직위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형평성의 이념에 따라 Rawls의 정의원칙을 보면, (1)은 동등한 자유의 이념을, (2)는 합당한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한다. 합당한 평등은 (i) 차등원칙과 (ii) 기회균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Rawls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근거로 공정으로서의 정의원칙을 정당화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여전에 대해 무지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원초적 입장에 있게 되면, 그들은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rule, 1971: 153)에 따라 자신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원리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주는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Rawls는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 '기원(origin)'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것은 무지의 장막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따라서 Rawls의 경우, 과정과는 무관하게 결과적인 불평등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다.

Dworkin은 바로 그러한 기원이야 말로 자유주의 윤리에 의해 다루어져야 할 주제라고 본다. 그에 따르면, 동등한 배려의 윤리는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추구한다. 하나는 평등한 중요성(equal importance)의 원칙으로서 성공적인 삶의 중요성은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별한 책임(special responsibility)의 원칙으로서 개인이 선택한 삶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그 자신이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Dworkin, 2002: 5). 이러한 원칙에 따르면, 불평등의 기원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회적 보상의 판단근거가 된다. 가령 평등한 중요성의 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시민들의 경제적 배경, 성, 인종, 특별한 기술이나 장애 등이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소극적 의무와 그러한 여건들로 인해 발생된 불평등을 보상해야 하는 적극적 의무를 갖는다(Dworkin, 2002: 6). 그러나 특별한 책임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불평등을 평등화하기 위해 보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것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따라서 불평등의 기원이 '여건'에 있는 경우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선택'에 있는 경우는 보상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Rawls는 결과적 불평등에 대한 보상을 합당한 평등으로 보지만, Dworkin은 불평등의 기원에 따른 보상을 합당한 평등으로 보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의 원리’를 모색하는 것이 동등한 자유와 합당한 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는 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Dworkin은 Rawls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⁴⁾

Dworkin의 이론적 기획은 Berlin의 가치다원론과 Rawls의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계승함으로써 ‘동등한 배려의 이념=형평성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것은 자원평등론으로 구체화된다.

IV. 윤리원칙에 기초한 자원평등론

Dworkin은 동등한 배려의 윤리원칙, 즉 평등한 중요성의 원칙과 특별한 책임의 원칙을 토대로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를 구상하고자 한다. 그것은 여건의 영향을 중립화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원리로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조화시키기 위한 실천전략이다. Dworkin에 따르면, 분배의 실천전략은 ‘복지’의 측면에서 결과적 평등을 강조하는 복지평등론과 ‘자원’의 측면에서 수단적 혹은 과정적 평등을 강조하는 자원평등론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복지평등론은 복지의 차이가 발생하는 ‘기원’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과 복지 개념이 폐락이나 즐거움과 같은 의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획이나 목표의 달성과 같은 성공을 의미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복지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활동에서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Dworkin은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로서 자원평등론의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한다.⁵⁾

1.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의 구상: 경매

Dworkin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의 자원에 대해 선망하지 않을

-
- 4) Kymlicka(2005)는 Rawls가 최초에 가졌던 문제의식을 일관되게 관철시키는데 부분적으로만 성공하였고, Dworkin이 그 문제의식을 보다 철저하게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양자의 관계를 연속적으로 본다. 그러나 Wolff(2007)는 양자의 관계를 굳이 연속적인 관계로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 5) Dworkin은 자원평등론을 정당화하기에 앞서 자원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바람직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일반적인 자원의 개념을 따르고자 한다.

때, 자원이 평등하게 분배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자원의 평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망검사(envy-test)'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자원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 '분배자'는 선망검사를 통해 더 이상의 선망이 없을 때까지 자원의 배분을 시도해야 한다. 그런데 자원은 균질적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배자의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또한 공급자 위주의 분배는 선망검사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수요자의 선호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으며, 수요자의 선택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분배자가 없이 사람들의 경쟁적이고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 분배가 이루어지는 절차를 구상하는 것이 선망검사를 통과하는데 유리하다. Dworkin은 불평등을 낳는 원흉으로 지목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형식'만큼 바람직한 기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시장의 형식들 가운데 특히 '경매(auction)'에 주목한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자원을 구입할 수 있는 동등한 구매권을 주고,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원을 경매에 붙이는 가상적인 상황을 생각해보자. 단,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처지(여건)에서 경매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경매가 완료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자원에 대해 선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이 가능한 이유는 선망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매는 선망검사가 실제로 가정하고 있는 것을, 즉 한 개인의 삶에 주어지는 사회적 자원의 참된 크기(measure)는 그 자원이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물어봄으로써 정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Dworkin, 2002: 70)." 경매에서는 어떤 개인에게 최종적으로 낙찰된 자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개인들이 경매과정에서 포기하고 나가는 그 가격대가 개인들이 부여하는 가치이며, 그것이 그들의 기회비용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동체의 모든 자원에 대한 경매가 완결되면, 각 개인들의 기회비용의 총합은 모두 동일할 것이다. "자원의 평등은 기회비용이라는 척도를 사용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전 가능한 자원의 가치를 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포기하는 가치로서 측정한다. 각 개인의 이전 가능한 전체 자원들이 그러한 방식으로 측정된 전체 기회비용의 총합과 같을 때, 그러한 자원들이 동등하게 분배된 것으로 간주한다. 가상적인 경매는 정확하게 그러한 결과를 보장하도록 설계된다. 경매가 끝나면, 그 경매에 의해 결정된 기회비용의 총합은 동일하다(Dworkin, 2002: 149)." Dworkin에 의하면, 그러한 기회비용의 동일성은 선망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경매는 전적으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매가 완료되면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구입한 자원에 대해 선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경매는 특별한 책임의 원칙을 적절하게 실현할 수 있는, 혹은 자율적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를 구상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

경매는 개인의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자유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Dworkin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하지 만 또한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 이는 Berlin의 소극적 자유개념과 일치한다. Dworkin(2002: 143)은 자유의 폭을 넓히거나 제약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 (liberty/constraint system)을 제시한다. 생명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자유의 제약으로서 안전의 원칙(principle of security, 149), 경매참여자들에게 선택의 폭 을 넓혀주기 위해 경매자원의 용도를 가능하면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추상의 원 칙(principle of abstraction, 151), 선택한 자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 정적 외부효과를 보완하는 교정의 원칙(principle of correction, 156), 사람들이 적 절한 인성이 형성되어 경매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는 진정성의 원칙(principle of authenticity, 159),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막는 독립의 원칙(principle of independence, 161)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 시한다.

2. 여건에 둔감한 분배원리의 구상: 가상적 보험

이상에서 제시한 다양한 원칙들이 적절하게 반영된 경매가 완결되어 선망검 사를 통과했다면, 분배는 평등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사람들은 다양한 선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Dworkin은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이유를 ‘운의 성격’에서 찾는다. 그는 운을 ‘선택적 운(option-luck)’과 ‘눈먼 운(brute-luck)’으로 구분한다(Dworkin, 2002: 73). 선택적 운은 심사숙고하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주식에 투자하여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았다면 그것은 선택적 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눈먼 운은 개인의 숙고적 판단과는 무관한 다른 요인 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벼락을 맞 았다면 눈먼 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선택적 운과 눈먼 운에 의해서 경매를 통해 완성되었던 자원의 평등이 위협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운에 대해서는 어 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야 추상적 평등의 원칙=동등한 배려를 실현하는데 도 움이 될 것인가?

Dworkin의 논리에 따르면, 일차적으로 ‘선택적 운’은 특별한 책임의 원칙에 따라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령 경매 이후에 A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기호를 선택하고, B는 비용이 적게 드는 기호를 선택하여 결과적으로 불평등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불평등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에 보 상이 주어질 필요가 없다. 따라서 관심의 대상은 눈먼 운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 치는 경우이다. 경매 이후 A가 희귀질환에 걸려 오직 치료를 위해 자원을 사용

함으로써 불평등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Dworkin이 제시하는 일차적인 해결책은 '보험'이다. 보험은 눈먼 운과 선택적 운의 연결고리이다(2002: 74). 가령 A가 경매 이후 자신이 희귀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비해서 일부의 자원을 보험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면, 그의 눈먼 운은 선택적 운에 의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는데 불행하게도 희귀병에 걸린 경우이다. 보험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와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두 가지 대답이 모두 가능하다. 가령 모든 사람이 희귀병에 걸릴 동일한 위험에 있으며, 그렇게 될 확률을 어느 정도 알고 보험을 구입할 기회가 모두에게 충분히 주어진다면, 특별한 책임의 원칙에 의하면 보상받을 수 없다(Dworkin, 2002: 77).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즉 보험을 들기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태어날 때부터 혹은 보험에 들기 전에 장애를 갖게 된 경우, 혹은 유전적으로 장애위험이 커서 보험회사가 보험판매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보험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재능, 능력, 기술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어떻게 보상되어야 하는가? Dworkin은 이러한 경우에 평등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서 여전에 둔감한 분배의 원리를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가 제시하는 모형이 '가상적 보험(hypothetical insurance)'이다. 그리고 가상적 보험시장을 조세체계와 연결시킴으로써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Rawls의 원초적 입장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여 그 경우에 대해 최대의 혜택을 주는 최소극대화규칙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모두가 비록 장애, 능력, 재능, 기술 등에 있어서 동일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적 변화에 의해서 불우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모두가 이러한 결과들에 대비해서 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처지에 있으며 그러한 의사가 있는 가상적인 세계를 가정할 수 있다. Dworkin(2002: 99-105)은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불우한 결과들에 대비해서 보험구매에 평균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대체적인 하한선을 정할 수 있으며, 그렇게 계산된 보험료 수준을 조세체계—특히 소득세 수준의 결정—에 적용함으로써 현실 보험으로 대응할 수 없는 눈먼 운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불평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그는 평등한 중요성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Dworkin에 의하면, 여전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의 원리를 채택하는 정치공동체는 정의로운 사회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개인이 추구하는 '좋은 삶'과 공동체의 '공동적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V. ‘좋은 삶’과 ‘공동적 삶’의 조화 가능성

Dworkin은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정의론으로서 자원평등론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이념적으로 자유와 평등의 경직된 적용이 아니라 공평성에 기초한 자유와 평등의 유연한 적용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자원평등론은 형평성의 논리적 근거로서 타당성을 갖는다. 이제 자원평등론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는 ‘좋은 삶’과 ‘공동적 삶’의 조화 가능성에 대한 Dworkin의 논변을 살펴보자.

Dworkin에 의하면, 정치공동체의 공동적 삶은 입법, 판결, 법의 집행, 정부의 행정기능 등과 같은 공식적인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표출된다. 따라서 정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개인들은 공동체가 행하는 공식적인 정치적 행위들의 성패가 자신의 사적인 삶에서 공명하는 것으로서, 즉 자신의 사적인 삶의 향상이나 쇠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인식한다(Dworkin, 2002: 231)”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공동체의 개인들은 윤리적인 차원에서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다. 윤리적으로 개인은 자신에게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각별하게 배려해야 하는 사적인 삶의 지배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와 동시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배려하는 것이 정의롭다는 정치적 삶의 지배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인이 처한 이러한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 Dworkin의 논변에 의하면, 공식적인 정치적 활동의 성패가 사적인 삶에서 공명하기 때문에, 자원평등론의 원리에 따라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공동적 삶과 사적인 삶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정치공동체가 개인의 사적인 삶에 대해 ‘윤리적 우선성(ethical priority)’을 갖는다고 주장하고(Dworkin, 2002: 236), 이러한 윤리적 우선성에 따라 행위하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을 자유주의적 시민공화주의자(liberal civic republican)라 부른다(2002: 231).

이제 우리는 윤리적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 윤리적 개인주의의 두 원칙, 즉 평등한 중요성의 원칙과 특별한 책임의 원칙이 던지고 있는 하나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시점에 왔다. 전자는 성공적 삶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후자는 개인이 선택한 삶의 성공여부는 그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윤리적 개인주의의 원칙은 “어떤 삶이 성공적인 삶인가?”라는 하나의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Dworkin의 답변을 살펴보자.

Dworkin은 성공적 삶의 판단기준으로서 의지적 관심(volitional interest)과 비판적 관심(critical interest)을 제시하고 있다(2002: 242). 의지적 관심은 삶의 성공여부를 개인이 실제로 원하는 것을 갖고 있거나 달성한 정도에 의해 판단한다. 비판적 관심은 삶을 더 좋은 삶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 즉 삶의 성공여부는 개인이 자신의 삶에

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취한 정도에 의해 판단된다. 의지적 관심은 개인적인 욕구의 충족과 선호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그에 비해 비판적 관심은 개인이 삶에 부여하는 가치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 그렇지만 두 개의 관심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령 사람들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비판적 관심에 의해서 의지적 관심이 유도된다. 역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의지적 관심에 의해서 비판적 관심이 유도된다. Dworkin에 의하면, 두 개의 관심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은 없다. 따라서 그는 직관적으로 비판적 관심이 자유주의의 윤리원칙에 적합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면, 정치원칙과 비판적 관심은 다음과 같이 서로 연관된다. 공동적 삶과 관련된 “정치원칙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공동체를 정의하는 것이며, 비판적 관심은 그러한 정치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것이다(Dworkin, 2002: 245).” 따라서 개인적인 삶의 성공여부는 사적 삶을 인도하는 가치에 관한 비판적 관심과 공동적 삶을 인도하는 정치원칙의 일관성, 즉 ‘규범적 온전성(normative integrity)’에 의해 판단된다는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비판적 관심을 정치공동체의 정의원칙에 일치시키는 것만으로는 삶의 성공여부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범적 온전성은 성공의 조건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판적 관심에 의해 인도된 개인의 ‘행위’가 얼마나 성공적인 것인가를 평가하는 논리가 필요하다. Dworkin은 평가모델로서 개인이 세상의 객관적 가치를 증진시키는데 미친 영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영향모델(model of impact; 2002: 251)과 삶에서 부딪히는 도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도전모델(model of challenge; Dworkin, 2002: 253)을 제시한다. 영향모델은 개인의 삶이 세상에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낼수록 성공적인 삶으로 평가한다. 도전모델은 삶 자체를 도전의 연속으로 본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삶의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기술을 연마하는 것 자체를 강조한다. 성취보다는 수행(performance)을 강조한다. Dworkin이 말하는 수행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practice)개념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마다 가치 있는 것을 행하는 탁월성(excellency)의 기준이 있다. 실천은 그러한 탁월성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야와 연마의 과정을 내포한다(MacIntyre, 1984: 187). 도전모델에서는 이러한 탁월한 행위능력을 확보하는 것—그것이 더 많은 복지를 가져올 것인지 아닌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을 성공적인 삶의 조건으로 보고 있다.

Dworkin에 의하면, 영향모델은 자기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가령 핵의 원리를 발견한 것은 세상을 이롭게 하였기 때문에 성공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폭탄을 만드는데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성공적이라 평가하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의 상쇄정도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평가 결과를 얻기 어렵다. 그에 반해 도전모델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영향모델이 빠지기 쉬운 딜레마로부터 벗어나 비판적 관심을 근거로 하는 질문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Dworkin은 도전모델을 선택한다. 특이하게도 그는 도전의 범위에 단순히 성공적인 수행 만이 아니라 성공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것(defining)’도 포함시킨다 (Dworkin, 2002: 258).⁶⁾ 성공적인 삶에 대한 정의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의존한다. 그래서 객관적 성공지표는 무의미하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윤리적 온전성(ethical integrity)’이 성공적 삶의 핵심을 이룬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이 그것의 중심적 특성들에 비추어 적절한 삶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즉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다른 삶도 올바르게 판단된 자신의 윤리적 상황의 특징들에 대하여 명백히 더 좋은 대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윤리적 온전성을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다 (Dworkin, 2002: 270).”

Dworkin에 의하면,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윤리적 우선성의 원칙에 따라 ‘여전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정의원리’에 기초한 정치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규범적 온전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정치공동체의 정의원칙에 상응하는 삶의 원칙(가치)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윤리적 온전성의 원칙에 따라 개인이 정치공동체의 정의원칙과 비판적인 삶의 원칙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질 때, ‘좋은 삶’과 ‘공동적 삶’은 조화를 이루게 되고, 개인의 삶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Dworkin이 ‘동등한 배려’의 윤리원칙을 중심으로 제시한 정의에 관한 논변이 형평성의 원리를 실현하는데 충분한가? 그의 논변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무엇인가?

VI. 자원평등론과 형평성, 그리고 정책적 함의

Dworkin의 자원평등론은 형평성의 이념을 확대·심화시키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원평등론이 형평성의 이념에 대해 갖는 의의와 한계, 그리고 그것이 갖는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자 한다.

6) Dworkin(2002: 277)에 의하면, 정부가 성공적인 삶에 대한 하나의 전형을 제시하는 것은 윤리적 자유주의의 원리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첫째, 형평성은 자유와 평등의 조절이념이다. 다시 말해서 두 이념의 조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Dworkin이 '동등한 배려'의 이념을 정당화하면서,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전통에 평등의 이념을 각인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Cohen, 1989; Roemer, 1996). 특히 자유에 대한 평등의 도덕적 우선성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한 것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일정한 방법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2002: 4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장 메커니즘—경매와 보험—을 논거로 자원평등론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철학적인 측면에서 개인의 자기개발을 막는 억압구조와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여를 막는 지배구조의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Anderson, 1989). Dworkin은 경매와 관련해서 자유의 확장과 제한을 위한 원칙들 가운데,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강조하는 '안전의 원칙'과 편견과 차별의 배제를 강조하는 '독립의 원칙'을 통해서 전통적인 평등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그리고 비싼 의료비용(2002: 8장)이나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 2002: 11, 12장) 등과 같은 실천적 문제에 대한 논변을 통해서 기본권의 보호와 차별철폐는 물론 사회적 약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적 노력들을 지지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론적 논거로 도입하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시장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정당화보다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평등 개념을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을 부정하면서 평등을 내세우기보다는 시장을 근거로 평등의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서는 이론적 전략으로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등한 자유와 합당한 평등을 추구하는 형평성의 이념은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의 원리'를 통해서 구현되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의지적인 선택과는 무관한 여건이 분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립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개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Dworkin의 분배원리는 자유주의 진영의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와 평등주의의 진영의 여건에 둔감한 분배원리를 조정하는 시도로서 유의미하다. 그런데 Rawls는 개인의 사회적 배경과 천부적 재능뿐만이 아니라 천부적 재능을 개발하는 능력 역시 여건으로 본다(Rawls, 1970: 103-104).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자의적(arbitrary)'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awls, 1970: 15). 이러한 입장에 근거해서 Dworkin의 논의를 보게 되면 모호한 부분이 드러난다. 여건과 선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개인의 통제가능성이다.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선택에 해당되고, 개인의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경우는 여건에 해당된다. Dworkin의 기본 가정은 여건과 선택은 명백히 구분가능하다는 것이다. 그가 선택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

는 선호(preference)나 기호(taste)의 경우를 살펴보자. 개인이 어떤 선호를 선택하는 데에는 다양한 여건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가령 개인이 신체조건과 같은 생물학적 한계,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규율하는 관례나 풍습과 같은 사회적 제약,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을 초월하는 선호나 기호를 선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개인이 자신이 선택한 선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한 대답을 찾기가 어렵다(Arneson, 1989). 또한 Dworkin이 여건의 대표적인 예로 제시하고 있는 능력(capability)이나 재능(talent)의 경우를 보자. 그에 따르면, 동일한 선호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재능이나 능력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보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력이나 재능은 개인의 교육에 대한 선택에 의해서 훈련될 수 있다. 즉, 그것은 타고난 부분도 있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 개발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능이나 능력의 경우도 일부분은 개인의 통제범위를 초월하지만, 또 일부분은 개인의 통제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부분과 초월하지 않는 부분을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는 무의미한가? 일정한 한계는 있지만, 여건과 선택을 구분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개인의 선택으로만 귀인하려는 자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여건으로만 귀인하려는 평등주의의 과도함을 극복하려는 시도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모호함이 이론을 버리는 근거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이론적 모호함은 실천적 혹은 정책적으로 완화될 수도 있다. 사례에 따라서 여건과 선택의 구분논리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형평성은 궁극적으로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조화를 추구한다. Dworkin은 정치공동체의 윤리적 우선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의 주요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을 정의의 근본문제로 제시한 Rawls(1971: 7)의 입장을 따른다. 윤리적 우선성은 우선적으로 정치공동체가 자신이 말하는 자원평등론에 근거해서 분배가 이루어지는 정치와 경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렇게 구축된 제도의 가치관과 일치하는 삶의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에 따라 충실히 살아간다면,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그러한 원리에 동의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Rawls는 합리적인 사람은 원초적 입장에 있게 되면 누구나 동일한 정의원칙에 도달할 것이라는 논변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Dworkin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분배원리’에 동의하게 될 것인가를 정당화하지 않고 있다. 단지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 보니 윤리적 우선성의 원칙이 법적 권리들은 개인의 희생을 대가로 효율성이나 다른 사회적 선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으뜸패(trumps)'라는 그의 유명한 권리테제(Dworkin, 1978; 2000)와 모순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김비환, 2001). 물론 부정의한 정치원칙이 지배하는 정치공동체는 윤리적으로 우선적일 수 없다. 그러한 경우 개인의 권리는 정치공동체와 갈등관계에 있게 된다. 즉, 개인은 권리를 으뜸패로 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Dworkin의 논변에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윤리적 정치공동체를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제시되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자원평등론에 기초한 정치공동체는 평등한 권리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으뜸패로서의 권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으뜸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평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Dworkin의 권리테제와 윤리적 우선성의 논변은 모순으로 보기 어렵다.

이제 형평성의 논거로서 Dworkin의 자원평등론이 갖는 정책적 의미를 정책지향, 정책영역 및 정책결정의 차원에서 살펴보자 한다.

먼저 정책지향과 관련해서 Dworkin의 자원평등론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Dworkin의 자원평등론은 최근 일반화되고 있는 시장중심적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유의미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행정개혁과 정책영역에서는 시장의 논리를 행정에 적용하거나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시도들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진부한 슬로건이 되고 만 개방화, 탈규제, 민영화의 논리가 공공영역 전반에 적용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불평등이 확대·심화되고 있다. 시장을 완전히 부정하고 평등주의에 집착하면서 불평등 문제를 극복하려는 시도는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Dworkin의 논리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이유는 그가 자유주의 전통 안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역시 신자유주의가 소중히 여기는 개인주의와 자유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평등을 자유의 도덕적 기초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에 보다 충실히다. 따라서 Dworkin의 논리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자기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이유는 그 역시 신자유주의자들처럼 시장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역시 시장을 중요시하지만, Hayek나 Friedman처럼 현실의 시장을 이상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현존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의 메커니즘을 근거로 공적 개입방법을 모색하고 정당화하고자 한다. 가령 이상적인 경매에서 제시된 동일한 구매권의 공적 부여 논리나(Ackerman & Alstott, 1999), 가상적인 보험에서 제시된 조세화의 논리는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평등론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

안적 정책지향으로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영역 및 정책결정의 논리와 관련해서 Dworkin의 자원평등론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 자원평등론은 불평등과 관련된 정책영역에서 활용가치가 크다. 주로 교육, 성, 인종, 장애, 동성애 등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불평등과 차별의 문제는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정책들’을 개발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다. 문제는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여건의 영역과 선택의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건의 영역과 선택의 영역을 구분할 수 있는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준은 정책의 사회적·기술적 환경에 따라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가령 성차별의 철폐를 위한 정책의 내용은 사회적인 성차별의 정도나 성전환의 기술적 가능성 등과 같은 환경적 요소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여건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논쟁적이라는 말은 합리적 토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미의 권력관계도 내포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두 가지 정책결정의 논리가 구상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약자 스스로가 정치 세력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여건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조직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찰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실제 정치과정에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Dworkin의 경우에는 이처럼 정치과정을 통해 사회적 동의를 도출하는 정책전략에 대한 논변을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결정의 방법은 그의 논변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둘째, 정책결정자가 ‘평등주의 기획가(egalitarian planner, Roemer, 1993)’가 되어 여건의 영역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것이다. 사회적 압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치영역과는 달리 행정영역에서 평등주의 기획가의 역할은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사실 사람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평등주의 기획가의 판단에 막연하게 동의하는 것이 가능하가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적어도 Dworkin의 논변에 의하면, 정책결정자가 ‘여건에 둔감하고, 선택에 민감한 원리’를 추구하는 평등주의 기획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등주의 기획가의 핵심적인 기능은 개괄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우선 그는 사회적으로 여건에 해당된다고 동의할만한 요소들의 목록을 결정하고, 요소들에 근거해서 사회집단을 유형화한다. 그리고 유형화된 집단내·외에서 발견되는 격차를 계산하고 적절한 보상의 범위를 제시하는 것이다. 가령 40세 연령의 사람들을 남성으로서 부모가 대학교육을 받은 집단 A와 여성으로서 부모가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 B로 유형화할 수 있다. A, B 각 집단 내에서의 소득격차는 선택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A와 B와의 소득격차는 여건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격차를 계산해서 적절한 보상의

범위를 결정한다. 요약하면, Dworkin의 이론은 정책영역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정책 분야에서 특히 유용하며, 정책결정의 논리와 관련해서는 정부에 대해 평등주의 기획가의 역할을 요구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VII. 결 론

사회적 형평성이 행정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적 형평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 형평성은 정의론에 근거한다. 이것은 사회적 형평성의 이념적 내용이 정의관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사회적 형평성을 일원론적인 원리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념적 다양성을 전제로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의론들을 그것들이 도출된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그러한 관점들이 갖는 의의와 한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비환.(2001). 드오킨의 자유주의 정치이론 비판: 강한 의미의 권리, 자유주의 공동체 그리고 삶의 통일성 개념을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5: 179-204.
- 김비환.(2002). 현대 자유주의적 평등론의 역사적 의의. 「법철학연구」, 5(2): 7-34.
- 염수균.(2002). 진보적 대안으로서의 민주적 자유주의: 드워킨(R. Dworkin)을 중심으로. 「범한철학」, 25: 213-237.
- 염수균.(2004). 드워킨의 자원평등론. 「범한철학」, 35: 99-132.
- 임의영.(1994). 신행정학의 규범적 가치로서 사회적 형평성: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기초한 정치철학적 비판. 「한국행정학보」, 28(4): 1157-1174.
- 임의영.(2003). 사회적 형평성의 개념적 심화를 위한 정의론의 비교연구: Rawls에 대한 Nozick, Walzer, Young의 비판적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2): 47-64.
- 차하순.(1983). 「형평의 연구: 17·18세기 유럽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서울: 일조각.
- Ackerman, B & Alstott, A.(1999). *The Stakeholder Society*.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Anderson, Elizabeth S.(1999). What is the Point of Equality? *Ethics*, 109(2):

287-337

- Arneson, R.J.(1989).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ical Studies*, 56: 77-93.
- Berlin, I.(2002). *Liberty*. ed. by H. Hardy. Oxford University Press.
- Cohen, G.A.(1989). On the Currency of Egalitarian Justice. *Ethics*, 99: 906-944.
- Dworkin, R.(1978). *Taking Rights Seriousl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2000). *A Matter of Principle*.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2002). *Sovereign Virtue Revisited*. *Ethics*, 113(1): 106-113.
- Dworkin, R.(2002). *Sovereign Virtue: The Theory and Practice of Equality*. Cambridge,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 Dworkin, R.(2006). 자유주의 가치들은 서로 충돌하는가? M. Lilly, Dworkin, & R. Silvers(eds.), 「이사야 벌린의 지적 유산」, 서유경(역), 99-119. 서울: 동아시아.
- Feinberg, J.(1970). *Doing & Deserving: Essays in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ederickson, H.G.(1980). *New Public Administration*.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 Frederickson, H.G.(1989). Minnowbrook II: Changing Epochs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9(2): 95-100.
- Harmon, M.(1974). Social Equity and Organizational Man: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Democrac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4(1): 11-18.
- Hart, D.K.(1974). Social Equity, Justice and Equitable Administrato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34(1): 3-11.
- Heath, Joshep.(2004). Dworkin's Auction. *Politics, Philosophy & Economics*, 3(3): 313-335.
- Jones, P.(1989). The Ideal of the Neutral State. in Goodin, R.E. & Reeve, A.(eds.), *Liberal Neutrality*, 9-38.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Kymlicka, W.(2005). 「현대정치철학의 이해: 자유주의,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주의, 시민권이론, 다문화주의, 폐미니즘」, 장동진 외(역). 서울: 동명사;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Oxford Clarendon Press, 1990.
- MacIntyre, A.(1984). *After Virtue: A Study of Moral Theory*. 2nd. Notre Dame, Indiana: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Mathew, D.(1984). The Public in Practice and Theory.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4(special issue): 120-125.

- Miller, D.(1991). Recent Theories of Social Justi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3): 371-391.
- Nozick, R.(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Basic Book, Inc., Publishers.
- Perelman, Ch.(1963). *The Idea of Justice and the Problem of Argument*.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New York: The Humanities Press.
- Rawls, J.(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Roemer, J.E.(1993). A Pragmatic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the Egalitarian Planner.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2(2): 146-166.
- Roemer, J.E.(1996). *Theories of Distributive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 Sadurski, W.(1985). *Giving Desert Its Due: Social Justice and Legal Theory*. Dordrecht, Boston, Lancaster: D. Riedel Publishing Company.
- Scheffler, S.(2003). What is egalitarianism?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31(1): 5-39.
- Sher, G.(1987). *Desert: Studies in Moral, Political, and Legal Philosophy*.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tark, A.(2002). Rethinking the Post-Rawlsian Debate over Egalitarian Justice. *Political Theory*, 30(1): 36-67.
- Walzer, M.(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ce of Pluralism and Equality*. New York: Basic Book, Inc., Publishers.
- Wolff, J.(2007). Equality: The Recent History of an Idea. *Journal of Moral Philosophy*, 4(1): 125-136.
- Young, I.M.(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 2001 Douglas Harper.
- Merriam-Webster's Dictionary of Law*, © 1996 Merriam-Webster, Inc.
- Random House Unabridged Dictionary*, © 2006 Random House, Inc.

Abstract

Searching for a Theoretical Ground of Social Equity: Focusing on R. Dworkin's 'Equality of Resources'

Euy-Young Lim

Social equity is an important ethical idea of public administration. Theoretically in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equity is illuminated only by Rawls' theory of justice. Equity is a coordinating idea searching for harmony between equal liberty and just equality. Various coordinating principles have been competitively suggested in the sphere of the theory of justice. In spite of that, there are a few attempts in public administration which have been aimed at making a theory of equity, including the various theories of justice.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troduce Dworkin's theory of resource-equality to the equity discourse of public administration. Dworkin's theory has stimulated a great deal of debate in contemporary liberal political philosophy. Dworkin suggests the *environment-insensitive* and *choice-sensitive* principles based on the ethical principle of *equal concern*. Dworkin's theory is useful for complementing the theory of equity in emphasizing individual choice and responsibility as well as compensation for environment-based inequality.

【Key words: equity, equality of resource, justice, Dworkin, Rawls】